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999. 5. 17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1일

다. 상정일자 :

- 1999년 4월 15일 (제159회임시회 제3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보류
- 1999년 5월 17일 (제160회임시회 제3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의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 정부에서는 지난 98. 7.16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99. 1.21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안 제22조)
 - 현행 중요재산의 매각시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토지 매각시
 -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소규모토지를 매각할 때
 -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경우등을 추가하여 경제여건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연체 및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함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인하 (안 제23조)

-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급식용 재산은 1000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으로 인하하고자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인정 (안 제23조의3)

- 공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감면
 - 전액감면 :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은 100%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기업 등
 - 일부감면 : 전액감면에 비하여 투자액 및 고용효과 등이 낮은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

○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출방식 개선 (안 제25조)

- 현재까지 건물의 사용료 산출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부지 사용료를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하게 함에 따라 과도한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담이 있었으나 건물의 실제사용 비율에 따라 면적을 계산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규정 (안 제28조)

- 현행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의 종류별 연체요율이 상이하고 수시 변경됨에 따라 연체요율 기준을 15퍼센트로 규정함

○ 관사 관리

- 관사정의중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을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 으로 함 (안 제45조)
-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52조)
 - 현행 관사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이
 -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문기)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고, 외국인투자촉진 및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기준을 조정하는등 조항별로 타당하게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 8장 관사관리중 제45조 관사정의에 있어 “소속공무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데 대한 검토와 제46조 관사구분중 3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관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조례안 제45조중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 을 “교육감소속공무원”으로 함
- 조례 제46조제3호중 “1급 및 2급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 거주관사, 기타 관사등”으로 함
- 조례안 제5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1.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공동숙사 및 면이하지역 근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서식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본문
- 수정동의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수정동의)
-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문 (현행+개정안+수정동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제안년월일 : 1999년 5월 17일

제안자 : 박노철 의원

1. 수정이유

-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관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안 제45조중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소속공무원”으로 함
- 조례 제46조제3호중 “1급 및 2급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 거주관사, 기타 관사등”으로 함
- 조례안 제5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1.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공동숙사 및 면이하지역 근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5조중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 을 “교육감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조례 제46조제3호중 “1급 및 2급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 거주관사, 기타 관사등”으로 함

안 제5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공동숙사 및 면이하지역 근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수정동의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동 의
<p>제4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p>	<p>제45조(정의) ----- ----- ----- <u>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u> ----- -----</p>	<p>제45조(정의) ----- ----- ----- <u>교육감소속공무원</u> ----- -----</p>
<p>제46조(관사의 구분)관사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관사(공관) :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2. 2급관사(준공관) : 3급 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관사(일반관사) : 1급 및 2급이외의 관사 	<p>제46조(관사의 구분)-----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3. ----- : <u>시설관리사 거주관사, 기타관사등</u> 	<p>제46조(관사의 구분)-----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3. ----- : <u>시설관리사 거주관사, 기타관사등</u>

원 안	개 정 안	수 정 동 의
<p>제52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의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정 가액의 100분의 6범위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p> <p>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제52조(사용료의 면제)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p> <p>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p>	<p>제52조(사용료의 면제)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p> <p>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p> <p>4. 공동숙사 및 면이하지역 근무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생략)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현행과 같음) 1. 부동산시가 표준액에</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④ (생략) ⑤ (생략) 1. (생략)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 담당장학사)가 된다. 3~4.(생략)</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관리국장..... (삭제)..... 3~4.(현행과 같음)</p>
<p>(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p>	<p>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파악) 총괄재산 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p>
<p>(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 잠종 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삭제)</p>
<p><신설></p>	<p>제20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p>제22조(재산매각대금의 납부등)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토록 하여야 한다.</p> <p>②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계약체결 당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계약시 계약보증</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도시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

현행	개정안
<p>금으로 대금의 1할과 1회 분납금으로 대금의 2할이상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의한 이자율이 영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p>	<p>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1000분의 30</u>으로 한다.</p> <p>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u>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u>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대부료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1000분의 50</u>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p> <p>4.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1000분의25로</p> <p>②..... 토지시가표준액.....</p> <p>③(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⑤(삭제)</p> <p>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영 제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이 대부료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1.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신설></p>	<p>2.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p> <p>3.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p> <p>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현	행	개 정 안
		<p>나.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다. <u>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라. <u>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u></p> <p>마.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u></p> <p>바. <u>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u></p> <p>사. <u>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u></p> <p>2. <u>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u></p> <p>가.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나. <u>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다. <u>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u></p> <p>라.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u></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u></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u></p>

현행	개정안
<p>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 ③(생략)</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⑤(생략)</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생략)</p> <p>1. <u>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체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할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u></p>	<p>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나. <u>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다. <u>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u></p> <p>라.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u></p> <p>마. <u>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u></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u></p> <p>사. <u>제2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u></p> <p>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u>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u></p> <p>⑤(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현행과 같음)</p> <p>1. <u>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건물부지로 본다)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2. ~ 3. (생략)</p> <p><신설></p>	<p>2. ~ 3. (현행과 같음)</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frac{\text{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1월말이내</p> <p>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이내</p> <p>② 계약 및 사용허가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도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p> <p>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p>

현행	개정안
<p><u>의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u></p>	<p><u>연 15퍼센트로 한다.</u> ②교육감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 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p>
<p>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u><신설></u></p>	<p>제33조(처분의 제한) 다만, 폐교·폐과등으로 교육활동 목적을 상실한 공유임야는 공공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p>
<p>제36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u>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제36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관리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 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p>

현행	개정안
<p>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경우에 한한다.</p>	<p>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제4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본청 및 청·소의장 또는 간부직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p> <p>제52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한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제45조(정의)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p> <p>제52조(사용료의 면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p>